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43
나)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5
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7
라) 도유(교육)재산취득(안).....	55
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3

※ 별책부록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세항설명서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서(안)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2월 11일(수요일) 10시37분

의사일정(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의안 상정
 - 가.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나.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도유(교육)재산취득(안)
 - 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의안 상정(제1호의안 의결)
 - 가.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나.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도유(교육)재산취득안(")
 - 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7분 개의)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르

<p>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p> <p>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어서 바로 본회가 시작되겠습니다.</p> <p>○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p> <p>(의사봉 3타)</p> <p>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p>	<p>아울러, 당초에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예정안을 추경예산안의 도의회에서의 심의 등과 고려해서 의사일정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나누어 드렸습니다.</p> <p>그리고 11월 정기회의를 통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셨고, 여기에 따른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각 위원님께 유인물로 서면보고를 해서 유인해서 배포해 올렸습니다.</p>
<p>(10시 39분)</p>	<p>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1. 경과보고</p> <p>○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p> <p>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1년 11월28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가 요구되어 '91년 12월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8호로 집회 공고되었습니다.</p> <p>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6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의 상정 및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으며, 2차 회의일인 12월 12일에는 1차 본회에서 의결 예정인 제1호 의안을 제외한 2호 내지 4호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으시겠습니다.</p>	<p>(10시 41분)</p> <p>2. 회기결정의 건</p> <p>○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p> <p>(의사봉 3타)</p> <p>금일 다시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12월 11일, 12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p> <p>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1년 12월 11일, 12일</p>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3.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1호의안인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 행정과장 엄갑도 : 관리국장께서 '92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가셨기 때문에 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신미년도 저물고 있는 이때를 맞이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은 체육청소년부로부터 '91년도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훈련비로 국고보조금 935만2천원이 교부결정 통보되었고, 진천군청으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250만원이 전입되는 등

총 1,185만 2천원의 세입계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증가제원 1,185만 2천원의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15개 중·고등학교 17개 종목에 대한 '91년도 하반기 후보선수 23명에 대한 장려금 230만원과 지도자수당 17명분 340만원, 훈련용품비 315만2천원 훈련지도여비 50만원등 계 935만2천원이며, 전입금사업으로는 진천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추경에 편성확정된 청주권역 학교 재배치 학교부지매입비 150억 4,962만 8천원중 80억은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 명년으로 이월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의결하여 주시어 '91년 회계년도 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본 건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예산 계상과 금년도 집행이 곤란한 청주기계공고 등에 대한 부지 매입비의 명시이월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간단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

는 사항으로 그 처리가 시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소위원회의 구성 심의를 생략하고 금일 바로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해서 도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년도 예산중 명시이월이 부지매입 못 한거, 이것 이외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예, 지금 금회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 받은 후에는 없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아니 그래서 공사나 기타 계획이 결국 명시이월 없이 계약이 집행이 된 거죠.

그래서 사고 이월되는 것은 있어도 명시이월은 이것 밖에 없다.....

○ 행정과장 엄갑도 : 지난번 추경예산 때 명시이월 받은것이 있고, 이것 하고 두가지가

○ 김사수 위원 : 두가지가.....

○ 행정과장 엄갑도 :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됐습니까?

○ 김사수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세입에서, 진천군에서는 도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지금 타 시·군에서는 도서관 전입금 전입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 박병해 위원 : 안 나오는 곳을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조치는 없나요?

○ 행정과장 엄갑도 : 지금 그래서 시·군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인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시·군 자체의 예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김사수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요건에 전입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확보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될 줄로 압니다.

진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금년도 25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벌써 군수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갑자기 예산조치 과정에서 잘 안돼서 요번에 비로소 거기에 예산에 잡혀서 250만원이 전입된 것 같은데, 평년도 예산에는 8백만원을 군에서 전입받는 걸로 약속이 돼서 군예산에 '9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걸로 볼 적에 진천군이라면 엄청나게 조그만한 군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요는 교육장 활동 여하에 따라서 전입금, 도서관에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좀더 교육장이나 기타 관계관들은 군청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해서 다만 얼마라도 전입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천군은 내년 8백만원, 금년에 2백5십, 약 1천만원 정도의 전입금을 받아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실무자들이나 기타 교육장은 군수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전입금을 얻도록, 다시한번 노력 할 것을 촉구합니다.

○ 행정과장 엄갑도 : 내년에는 더 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명시이월비 80억원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세입·세출 각각 3천2백2십 8억5천1백5십6만8천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4.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검

정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2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 : 제2호 의안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책부록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교사채용시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시·도와 균형유지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액으로 하여 예산에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집행기관에서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건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구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명일 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5. 도유(교육)재산취득(안)

6.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3호의안인 도유(교육)재산 취득안과 제4호의안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상호 연관된 안건으로서 중복 심의를 피하고, 능률적 심의를 하고자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고일영 : 재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제3호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책부록 도유(교육)재산취득(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다음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교육)재산취득안 취득예정지 지번·지목·지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위치가 표시된 것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인 지도를 위원석을 기준으로 증양에 설치하여 설명)

여기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강내로 나가는 길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25미터로 확장이 되어서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내 쪽으로 가다보려는 이 곳이 증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여기 못미쳐 옛날 화장터가 있었는데 바로 화장터를 지나서 200미터쯤 서쪽으로 가려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청주기계공고 이전부지입니다.

사유지 277,246평을 저희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증양을 통과하는 상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 수도관은 대청댐에서 도청을 거쳐서 천안으로 가는 상수관입니다.

그게 직경이 1.2미터 짜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관이 지나는 토지는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2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서 사용할 경우에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 상수관이 지나는 지반은 저희가 무상으로 쓰도록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관을 이설하게 되려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혹시 이설을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이. 미터당 이설할때 8십만원이 든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만약 이설을 한다면 700미터를 이설을 해야 되겠기에 5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이설을 하면서 상수관이 묻혀있던 땅을 저희가 학교 용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지가 한 51%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임야중에는 또 분묘가 31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물이 2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가 사과나무를 포함해서 3,850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와 주택이 각각 한동씩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지를 학교용지로 쓰게 되려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8천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금 말씀드린 상수관 이설하는데 약 5억6천만원 정도 추가로, 만약에 이설을 한다면은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가칭 가경고등학교 부지는, 이것은 가경동 1차 택지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로 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침 토개공에서 그것을 매수해 달라는 공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금년중에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경고등학교는 4,700평입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은 15억6천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원가제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조성한 것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기계공고 매입예정 부지는 평당 지장물 보상을 포함해서 4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가경고등학교 부지는 평당 3십3만 2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부의장 김광수 : 부지 정리가 된 지역이죠, 거기는 ?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가경은 완전히 부지 정리가 된 것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여기는 앞으로 해야 할 데이고.....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이재희 위원 : 잠깐, 저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지금 그 상수관을 이설하는데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가상으로 꼭 이설할 필요가 있을 때 예상인데, 지금 평균지가는 43만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그럼 이설해서 사용하는게 약 1,000평 좀 넘는다고 그러셨죠 ?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이재희 위원 : 그러면 평당 5백만원씩 쳐주는 것 아닙니까 ?

땅 값으로 친다면은, 공사비를 땅 값으로 환원하며는.....

○ 재무과장 고일영 : 그런데요 5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당 5십만원정도인데.....

그런데 이 상수관이 거의 증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예정지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쓸 수만 있다며는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는데,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하기를 그 상수관이 지나는 지상에는 건물을 축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사증축할 토지에 건물이 반듯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며는 아마, 이설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 추진 상황은 청주기계
공고 이전 부지는 55필지에 지주가 47명입
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로는 54%를 지금 매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주별로는 약 92%정도를 매수가
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열흘전에 시청에다가
학교시설 경비로 결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
냈습니다.

○ 장중호 위원 : 지금 그 청주기계공고
나 가경고등학교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했
으며,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예산을 보
며는 얼마,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요즘 부
동산이라는것이 잠자고 나면 다르고 한데
그 예산액 가지고서 우리가 목적인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청주기계공고
이전부지 선정 문제는 1년전부터 청주권역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뿐이 아니라 청고도 이
전계획증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청고
라던지 청주권역 해가지고서 청원군, 증평
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호학원 내에 5개 학원을 송화동
으로 이전하는 거라든지, 또는 미원고등학

교를 공고로 개설한다든지, 또는 증평여교
를 상고로 개설하는것, 그리고 증평여중을
중학교로 합치는 것 등을 망라해서 구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기계공고 이전 부지를 이쪽으
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지역적으로 공고가
어떤 한 방향에 편중시켜서는 안된다 해서
남쪽으로는 부강공고가 있고, 동쪽으로는
미원공고가 있고, 북쪽으로는 증평공고가
있고, 그래서 기계공고는 청주시를 벗어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기계공고 동분회에서도 이전
을 해 달라는 요청이, 최신 시설을 해주고
또 교지를 넓게 잡아서 이전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금년초 교육청에다 낸적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부지를 여기 소년원 옆
에 있는 거기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도 하려고 보니까 부강공고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왕이면 서쪽으로 하자해서 서북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북쪽은 지금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습
니다.

거의가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쪽은 들어갈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쪽 어딘가 꼭 해야되겠다

하고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 봤는데 이만한 위치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로 이전하기로 한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창방면에는 충청북도 테크노빌 계획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북 공고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 지역으로 어딘가 기계공고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물색을 하다가 이 곳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 장중호 위원 : 물색한 주관 단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위시해서 간부님들이 하시는가요?

그걸 좀 알고 싶다, 이 말씀이요.

○ 재무과장 고일영 : 그것은 저희가 국·과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기계공고 동문쪽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양쪽 부지를 다 사고서도 약 9억정도가 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진입도로를, 이게 강내가는 길인데, 여기서 강내가는 길 25미터 도로에서 기계공고 매입 예정지 들어가는 길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면에 있기는 있지만서도, 남쪽으로 정문을 낸다고 보며는 여기 건물 배치에 따라서 어디다가 교문을 내야될지 몰라서 아직 진입도로 매입은 구상만 하고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매입하고 하려는 층

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장중호 위원 : 10년이고, 20년이고 앞을 내다보고 한 것이죠.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습니다.

○ 장중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내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답사를 하시고서 내일, 명일 2차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내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4호의안 설명하세요.

○ 재무과장 고일영 : 4호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책부록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그 다음장 '92년도 교육청별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김사수 위원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김사수 위원 : 본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앞으로 교육청, 학교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의시간도 있고 하나까 본청분 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시고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내일 질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설명은 이상으로 증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영세 : 긴급 동의를 들어 왔습니다.

찬성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마치시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각 의안의 설명과 제1호의안은 의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호 제4호의안인 도유(교육)재산취득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함에 앞서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일, 김사수 두분 위원님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상일, 김사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계부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 도유(교육)재산취득(안) : 별첨 4.
-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5.

※ 별책부록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항설명서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서(안)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2월 12일 (목요일) 10시 33분

의 사 일 정(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의안의결

- 가.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도유(교육)재산취득(안)
- 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 1.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도유(교육)재산취득(안)
-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금일 질의 및 토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 바로 이송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협조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 1.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어제에 이어

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제2호 의안인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응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수수료 2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그 2만원의 내역이라고 할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지금 주무국장이 교육감 순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입니다.

2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릴다머는 대강 예산에 시험문제 출제수당 이것이 있고, 채점수당, 면접수당, 시험감독및 관리위원수당, 신문공고료, 시험지 인쇄및 종사원 급식비등 이러한 등등의 예산으로서 지출이 됩니다.

○ 김응복 위원 : 찢하지마는 그 금액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의장 김영세 : 지난번 시험본 것에 있어 표본을 들어 가지고 전부 경비 나간 것을 열거해서 평균하니까 얼마나온다, 이

렇게 설명하세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지난번 것을 말씀드릴다머는 '91년도 유치원에 응시 인원이 335명이고, 수수료징수액이 1인당 2천원씩하여 67만원입니다.

거기에 집행액이 695만천원인데 일인당 평균이 2만천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161명에 수수료징수액이 일인당 2천원씩 하여 32만2천원, 그리고 집행액이 710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평균 4만4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천199명에 수수료징수액이 239만8천원, 그중에서 집행액이 실지로 집행된 것은 2천566만6천원이 들어서 일인당 2만2천원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해보머는 일인당 2만9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린다머는 시험문제출제수당으로서 논술출제, 논술편집, 면접출제, 면접편집등 이렇게 해서 국민학교 교사 것만입니다.

유치원하고 중학교 것은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오고, 국민학교 것 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1,272만2천원이 들어 갔고, 채점수당에는 논술채점, 면접고사 채점 등 먼저 것이 127만2천원이고 채점수

당으로써 천281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편집수당으로써 편집에 위원수당입니다.

이것이 21명 잡아서 52만5천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험감독및 관리위원 수당으로써 논술고사, 편집고사에, 여기에 감독및 위원 수당으로써 3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가, 이것이 국민학교만 해서 한 3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험지 인쇄및 종사원 등에 대한 급식 또는 출제여비 등의 여러가지 작업경비로써 이것이 한 288만9천원, 이래서 약 '92년도 예산으로써 8백9십6만7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작년도에는 많이 들어가서 천 566만2천원이 작년 들어갔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령 모든 인원수에 얼마 들어간 것을 인원수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 일인당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것 아닌가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 김응복 위원 : 2만원이상 나온다는 것 아닌가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2만9천원 나왔습니다.

○ 김응복 위원 : 그러나, 이 2만원으로 인상 했을때에 2만원 내는 사람이 '뭐가 2천원 했던것이 2만원 하느냐' 했을 때에는

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타당성 있게 얘기가 되고, '역시 참 이게 부족하구나' 납득해야 될 것 같아요.

2만원의 산출근거, 지금 근거라는 건 전체적으로 따져서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인원으로 나뉘보니까, 일인당 2만천원, 2만2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내는 사람, 일선에서 '2만원이 어찌 나오느냐, 그 산출근거가 뭐겠느냐' 예를 들어서 출제비 얼마 등등 여러가지 것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내는 사람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길때 이러느냐' 했을 때에는 산출근거를 좀 얘기해달는 얘기죠.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저희들이 그걸 개인당 2만원에 대해서 얼마씩 얼마씩 들어 간다는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못내고요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일인당 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거기서 여러가지를 몇분의 몇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못 내었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네, 되었습니까?
(부의장 김광수 거수로 발언 신청)

네, 김광수 부의장 질의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 네, 김광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121호를 보며는
입법예고한 공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입법예고를 했는지 그 내
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초등교직과장 김영재 : 네, 입법예고
는 충북도보에다가 11월 1일 해서 교육감님
께서 공고 제121호로다가,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거기 보며는 3항에
의견제출 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고후
에 의견을 접수한 사람이 있는지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20일까지 없
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하나도 없었어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단체및
개인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렇다며는 이
제 '2천원 하던것을 2만원으로 해도 아무런
이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
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김응복 위원이 질문
을 하는 사항은 '왜 하필이면 2만원으로 했
는가' 이겁니다.

왜 3만원도 있고, 또 3만5천원도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2만원으로, 증전에 2천원
에서 몇%로 올린것이요, 이게 백% 인가,
천%가, 천% 올려서 2만원으로 했는데 어떻
게 하필이면 2만원인가, 또 작년에 수험생
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작성된 것이 아
닌가 봐 집니다.

그런데 우리도를 보면 초등, 중등 다 합
해서 천695명이 여기에 응시를 했고, 그 수
수로 낸것도 339만원 이란 말이요, 실질적
으로 경비 지출한 것은 3천972만2천원 이란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본 것이
3천633만2천원 적자를 보았던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적정액이
되는 것인지, 기왕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그래도 근사
치를 만들어서 그 수익자 부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2만원으로 한다하더라도 지금 금년도 예
로 보더라도 지금 8천원이 손해를 보고, 작
년도로 계산한다고 할것 같으면 훨씬 더 손
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향후 내년도, 내후년
도 계속해서 응시자가 나오고 하는데 매년
이 조례를 고친다고 하는 것도 지금보니까
어려운것 같고 이 기준치를 잘 산정해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
셔야 하는데,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공동관리위원회란게 뭐예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시험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도에 중등국장님들이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 거기서 합의를 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잠깐 중단하시고, 저 중등교육국장께서 그 합의사항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금년도 공개전형시험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국 중등교육국장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 결정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수수료가 2천원이며는 불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작다, 각 도에서 거기에 투자된 투자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고 이것을 일정 시일내 전부 제출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2천원을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깐, 5천원선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각 시·도에서 투자된

그 비용을 전부 산출해 보니까, 저희들도 거의 비슷하게 대개가 초등은 4만4천원, 중등은 금년도에도 실시될 해본 결과 2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평균.

그래서 그것을 15개 시·도를 수합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국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각 시·도에 징수 인상액을 전부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3만원을 요구한 시·도도 있고한데, 저희들도에서도 2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할때...

그래서 각 시·도에서 2만원 수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그 자체 도비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 그때야 만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가 그 만큼 그 전형을 실시하는데 비용으로 투자가 압될 것 아니냐, 왜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하는데, 학생들 내는 수업료가 전형을 위한 경비로 해서 투자가 될게 뭐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시·도에 중등국장 회의에서 찬성하기를 2만원 선으로 하고 그 부족액은 각 시·도의 도비로써 충당한다, 이렇게 합의를 봐서 그것을 바로 조례로다가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바로 서둘러서 된데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충남,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런데 광주

는 거기에 조태가 '92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를 못했고, 4개 시·도는 실시를 했습니다.

2만원씩, 그런데 대전은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만8천원으로 확정 된걸로 알고 있고, 타시·도는 전부 조사해본 결과 전부 다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도의회에 상정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2만원으로 하려는 금년도 같으면 9천원은 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증등은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2만6천원 평균이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현재 여기 나온 유인물을 볼것 같은면 2만2천이라고 되어있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것은 작년도, '91년도에 실시한 전형료 일때 이지요.

○ 부의장 김광수 : '91년도.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저희들 벌써 '91년도가 끝났으니까요.

○ 부의장 김광수 : '91년도 전형은 끝나고, 작년도 학생들 전형관계 이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선생님들 전형관계.....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렇다고 볼적에 작년도 2만원을 해도 이룬데 금년도 사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금년도에는... ..

○ 부의장 김광수 : '92년도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92년도에는 일전에 필답고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에 대한 실기심사도 끝났고요.

그래서 일차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일차에 과목 과락자를 제외 해 놓고 그다음에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면접을 실시하고, 이렇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분할을 한다고 하려는 일인당 2만6천원 정도는 계상이 될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것이 금년도 응시자, 내년도 계속 있게 되는 것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 향후 응시자 동향은 어떻게 보아집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두번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과 여러가지 작년도에는 대학을 졸업 말을 예정자 또는 일반 사립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상당수, 천명이 넘는 응시자가 나왔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중등만 하더라도 175명 모집에 불가 700명 정도, 작년에 반정도 밖에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앞으로 줄어들어 가는 추세라고 보겠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줄어들어 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이 응시자가 많은 것 같으려는 이걸가지고 충당이 되고, 응시자가 적을 것 같으려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겠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렇지요 같은 일은 똑같이 하나까요.

그 절차를 말씀드려서는 이게 중등에 있어서는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4개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 교양교과를 책임지고 출제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계통, 예능계통 이것은 4개 지구로다가 나누어서 저희도는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 이렇게 4개 시·도가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공업계통, 농업계통, 상업계통, 전자계산계통 등 이렇게 8개 교과를 출제를 해서 이것을

인쇄를 해서 각 시·도로 보내 주며는 그 시·도에서 또 인원수 대로 인쇄를 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인쇄비, 이런 것은 각 시·도가 공동으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그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고사하고, 면접고사하고, 실기테스트는 그 시·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대전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만원이 통과가 되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도의회에 가서 2천원이 깎여서 만8천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렇게만 되고 타시·도에서는 전부다 2만원으로 아마 된걸로.....

○ 부의장 김광수 : 거기에서 2천원이 삭감이 되고, 만8천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삭감 내용을 아시고 계시나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정보에 입각해서 저희들 전문직끼리 서로 정보 연락을 한 결과 2천원이 깎여서 만8천원이 됐다.

단, 대전시만 그렇게 되고, 타시·도는 전부다 2만원으로 공통적으로 아마 다 된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대전에 이런 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2만원으로 현재 입법에 고 하고, 또 당청에서 요구하는데도 2만원으로 해주었을 경우, 그 다음에 도의회에 가서 이것도 어떠한 논란이 안 생기겠어요?

대전시가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15개 시·도에서 대전시만 유달리 이렇게 2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만8천이 되고, 14개 시·도는 전부다 2만원이 되고, 바로 이웃인 충남도 2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아마 금년도서 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되었습니까?

○ 부의장 김광수 : 예.

○ 의장 김영세 :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안전에 대해서는 한분이 두번 이상 질의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실 때에는 최대한 집약을 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잠시 침묵)

질의 더 없으십니까?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 질의 하시지요?

○ 김사수 위원 : 이게 어차피 부족액은 우리 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초등교직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러면는 2만원이라는 근거는 대충,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아주 예산을 절약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작년도 예산집행 예에 의해 나온 것인데, 한다면 정말로 실질경비가 얼마 들어 간다 하는 것을 내본 적이 있어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실질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집행한 것은 '91년도 것은 그대로 집행한 사실입니다.

○ 김사수 위원 : 그것을 절약을 좀 한 다며는 수당이나 뭐 이런 것 들을, 위원님들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좀 절약을 하고, 또 기타 소모품비나, 급식비나, 이런 경비를 최저로 줄었을 때 어느 정도 꼭 소요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실예만 가지고 따진 것 이란 말이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 김사수 위원 : 그래서 2만원이란 것

이 공중에 뜬돈이라,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둔 건지; 기준을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로 볼 때는.

초등은 4만4천원이고, 중등은 2만원이고, 유치원도 한 2만원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 2만9천원이 소요한데, 한 2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막연한 걸로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수수료 받는 것이 아직 조래 통과 안되었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안했을 것 아니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내년도 예산에는 896만7천원입니다, 국민학교 교사만이.

○ 김사수 위원 : 글썄, 금년도 예산에서있느냐, 안서있느냐 그말이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서있습니다.

'92년도 예산관계는 지금 도의회에.....

○ 김사수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계상됐느냐, 안됐느냐?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돼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예산에 수수료를 2만원을 안 올리고, 2천원으로 받는 걸로 해서 계상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그렇지요

○ 김사수 위원 : 그래 이 2만원을 받으

면 그 만큼 수입이 느는 거지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 수입이 느는 거지요, 수수료에 수입이 느는 거지요

○ 김사수 위원 : 수수료에 일인당 2만원으로 한 산출근거가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2만원으로 할때는 2만원이라는 뭔가 타당성 있는 얘기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설명들어 가지고는 2만9천원 평균 나왔는데, 2만원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부족액은 도예산에서 충당하게 되는 건데.....

○ 의장 김영세 : 중등교육국장 거기에 계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중등교육국장 집행기관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 의장 김영세 : 제가 타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1대1 경비로 다 충족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도한다, 이런 회의결과가 나왔다는데, 그 사실이 맞느냐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서는 5천원 정도 인상해서 추진해보자, 이래서 5천원 이면 너무 작다, 1대1 경비로써.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전부 다 충

당을 해야하니까, 각 시·도에서 산출을 해서 지금 평균 2만9천원, 저희들 도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2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이 수합을 해서 2만원이 적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대1 경비이니까, 우선은 2만원으로하고 또 연차적으로; 각 선생님 응시수가 자꾸만 감소해서 나갈 경우에는 그 경비 가지고서도 부족할 것 아니냐, 그때 가서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1대1 경비로서 인상조치 하는 걸로 보자, 이렇게 한것은 사실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김위원 답변되었습니다?

(김사수위원 침묵)

○ 의장 김영세 : 또, 보충질의 하실 분질의.....

○ 김사수 위원 : 막연한 얘기인데, 이게 2천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올리면 문제는 문제라고, 천배, 어짜피 모자라는 것은 도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될 일이란 말이요, 그렇다며는 2만원, 이렇게 내놓으면 이해가 가기가 참 힘들거예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일부 도에서는 3만원까지도 인상을 하자, 아주 1대1 경비니까.....

○ 김사수 위원 : 글썸 1대1 경비라면

아주 1대1 경비로 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도에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족의 선생님들이 시험보는 것인데, 5천으로 하던, 만원으로 하여서 나머지는 좀 연차적으로 올린다던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만 또, 그렇게 5천원이나, 만원이나 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 의장 김영세 : 예, 다시.....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권혁풍위원 질의 하세요?

○ 권혁풍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권혁풍 위원 : 이것이 몇 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2천원씩?

그리고 천% 인상인데, 불가역제 정책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전행료 책정은 작년도죠, 작년도에 처음 공개채용시험을 보았으니까요.

○ 권혁풍 위원 : 그렇게 되면, 천% 인상인데 그게 납득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작년도에는 아마 교육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조례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답변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려는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권혁풍 위원 : 제가 질문한 것 처럼 작년도에 책정된 액수가 1년만에 천% 인상된다는 것은 물론 분석을 해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정으로 이해 됩니다마는 응시생으로부터 반응이 '어떻게 물가가 천%를 뿔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반대토론 또 하실분,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말씀하세요.

○ 김사수 위원 : 어차피 예산에서 부족액을 충당 하는 것이면, 금액을 좀 아래로 내려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 그러니까 물가고라 던지 기타 여러가지로 비추어 볼때, 2천원은 너무 적다 하는 감이들어가니까,

한 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에는 받고, 부족액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돈이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에 꼭 있어야 되는 돈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2만원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 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받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김사수위원께서는 이따가 찬성토론을 들으시고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찬성토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이상일 위원 : 작년예 책정된 2천원을 2만원으로 올린다, 프토테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입학시험 전형료도 2만5천원씩 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우리 도예산을 '91년도에서 3천6백3십3만원이란 돈을 수익자한테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완전히 1대1 경비가 아니고,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3만원으로 올려서 출제수당도 현실화 시켜 주고, 일하는 분들에 대한 식사도 재대로 해주고, 아주 올려 놓아야지 이것을 내년도에 몇 천만원 모자르면 또 인상하고, 또 인상할 것 입니

까?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기에 뺏하니까, 지금 근사치에 가깝도록 2만원으로 책정을 했어도 지금 내년도에 시험 볼려면 또 부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왕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는 사실 지금 2만6천원 정도 실비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올린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 이재희 위원 : 저도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일위원하고 동감입니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한 도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전부 걸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입법예고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게 또 우리 의회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도의회로 이송 되는 문제인데, 이 뒤에 충청북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예산자료철을 보며는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을 출제수당이라든지, 감독수당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좀 보안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일 위원처럼 전~~8~~는 좀 프로테이저로는 그렇지만서도 현실성있게 2만원으로 해 주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토론은 반대토론 두 분, 찬성토론 두 분 공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시키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는데, 표결전에 원안 이외에 수정동의를 해서 개의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을까요?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보충설명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영세 : 예, 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까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2천원으로 책정된 것은 '83년도에 제정된 조례라고 합니다.

공개채용은 작년도에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83년도부터 했다는 그 착오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개의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의장 김사수위원석을 바라보며 발언하자)

○ 김사수 위원 : 철회요.

○ 의장 김영세 : 예, 철회하겠습니까?

○ 김사수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발의 안할 것입니까?

○ 부의장 김광수 : 아니, 철회요?

발의를 안 했는데.....

○ 의장 김영세 : 아니, 개의 발의를 안 하시는 거죠.

○ 김사수 위원 : 예 안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1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장의외 9명 거수)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결과 10대1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2. 도유(교육)재산취득(안)

3.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일괄 상정된 제3호의안인 도유재산취득안과 제4호의안

인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려는 14페이지에서 부터는 대부분 구내식당, 이발소, 매점, 기타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세가지에 대한 임대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 보려는 이발소, 식당, 매점 이러한 임대 관계로 해서 기간이 만료되려는 으레 분쟁들이 나서, 아주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이 날 때마다 그 서무나 교장들의 교권 추락에 관한 문제가 뒤따르고 아주 시끄럽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임대하는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는 부지만 임대를 하는 거냐, 그전에 보려는 부지만 임대를 받고서 매점하는 사람이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들어온다, 하는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계약상 여건이 만족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분쟁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여기 나와있는 임대계약은 대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고일명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상사용 허가내역에는 건물·토지도 경작목적으로 하는 경지, 그리고 대지 기타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산출하는 데는 경지에 대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 금액과 그리고 농지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중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소나, 식당 등에 건물은 개인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던, 어쨌던 간에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임대료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박병해 위원 : 문제는 그러한 과세표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만나 갈려고 하는, 거기다 폐를 써서 부쳐서 뭔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서류상 나타날 수가 없는 것으로도 보겠죠.

이게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만 따지는데, 학교하고 그 본인학교의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

한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좋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건물도 토지도 다 학교소유 일때 임대를 해주는 방향, 이것이 가장 깨끗하지 않겠느냐, 매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서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거기다 차츰 차츰 자꾸 붙여서 짓고, 이것 내 집인데, 왜 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임대계약은 했어도 막부가내이고, 또 서운한 점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건물 다 학교에서 임대하는 그런 때만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라도 뭔가 단단한 어떤 계약조건이 됐으면, 교장들이 나중에 욕을 먹고 이런 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고일명 : 그 학교부지 내에 매점이나 또는 식당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기부채납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지어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도내에 학교부지 내에 매점이나 식당은 개인이 설령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밖에 옛날에서 부터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경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줍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 됐습니까?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상일위원 말씀하세요.

○ 이상일 위원 : 이상일입니다.

지금 여기 구내식당이 꽤 여러 건 나와 있는 데요, 구내식당을 임대하면 대개 임대 기간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고일영 : 1년입니다.

○ 이상일 위원 : 1년입니까?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이상일 위원 : 요즘 임대법에 2년으로, 점포임대나 가옥임대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년이나 3년이나 계속 임대를 했을 때, 구내식당이 상당히 보수를 한다던지, 수리·도색을 한다던지 이랬을 때, 그 수리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주는 건지, 또 내년엔 토지시가표준액 같은게 인상이 되며는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인상을 해야 하는데, 구내식당이라는게 학생들에게 싸게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값은 못 올리고 밥은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식사와 질이 저하 돼서 구내식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물론, 구내식당에 수리비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매년 지가공시가격 그 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당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하는 분들한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는 내년엔 부담이 자꾸 증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렇게 오르리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또.....

물론 그렇습니다.

또 임대료를 많이 내며는 물론 그 임대료 내는 것 만큼에 식사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저희 구내식당도 임대료를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징수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됐습니까?

○ 이상일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지금 3호의안하고 4호의안이 같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재산취득안도 같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홍신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신회 위원 : 홍신회입니다.

이 3페이지를 보며는 청주농고에 농업박물관 신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건물만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 재무과장 고일명 : 예, 그렇습니다.

○ 홍신회 위원 : 그러면 그 규모로 보아 가지고 거기에 갖추어야 될 소장품의 문제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 또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서 박물관의 구실을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나요?

○ 재무과장 고일명 : 예, 그것은 나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 홍신회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농업박물관은 하나만 하는 거죠?

○ 재무과장 고일명 : 지금 현재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신회 위원 : 예, 그런데 이 박물관이란게 저희도 학교에서 해보려는 굉장한 힘들은 시설이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잘못 하려는 건물이나 지어놓고 간판만 걸어 놓는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쉬운데, 물론 이것은 농업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분야보다는 어려움은 좀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소장품 갖추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재무과장 고일명 : 글썽,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 홍신회 위원 : 예.

(중등교육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재무과장 고일명 : 이젠 저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을 드리신답니다.

○ 홍신회 위원 : 예.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청주농고에 농업박물관을 건축하게 된 동기에서 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영농학생진전대회를 청주농고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연례행사로써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교환, 세태에 관한, 농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농고학생들 그중에서도 영농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영농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한마당 놀이잔치를 하는 것 입니다. 옛날과는 좀 달라서.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농업기계 발달사, 농업의 발달사 또는 현대의 수경재배 방법, 과학영농법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모형등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한 것을 교육적으로 국민학교에서 부터 초·중·고학생들이 청주농고를 견학 할 기회가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나라의 농경시대부터, 원시시대에서 부터 현대 까지의 농업의 발달과정이라던가 또는 사용했던 농기계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가지 등등을 전시를 해서 좀 뭔가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심어주자 하는 의도에서 농업박물관을 설립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청주농고가 중앙이고 하기 때문에 청주농고에다가 개설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0점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 흥신희 위원 : 그래 농기구라면 부피도 큰건데, 이게 이 면적에 다 전시가 가능한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밖에 다 설치할 것은 밖에다 하고, 실내에다 할 것은 실내에다 하고, 계획서는 이미 다 작성이 돼서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 흥신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이재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기관별 유상사용 허가 내역에 추정사용료가 있는데, 14페이지 이 추정사용료는 '91년도에는 이만치 받은건지

이보다는 더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고일명 : 여기 추정사용료는 금년도에 계약분을 적시를 한겁니다.

○ 이재희 위원 :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상된 폭입니까 이께?

○ 재무과장 고일명 : 많이 인상이 됐지요.

○ 이재희 위원 :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고일명 : 그리고 내년에도 경지는 별로 인상이 안됩니다마는 대지라던지 기타 용지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것 만큼 인상이 됩니다.

○ 이재희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규정에, 과세시가지, 표준액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하겠지만, 어떻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사실상 여기 몇개는 짹짹하게 재미를 보는데가 많습니다.

어떤데는 구내식당 건물 한 2백평정도 지어 놓고 월세로 따져 한 20만원도 안되는데 사실상 일반 시가로 보면 조그만 10평미만 야식집도 보증금에 월5만원이나, 월세 몇 십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농협출장소가 있는데 여기 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년에 이 5만5천원을 받아서 뭘 하는 건지 말이지요?

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 재무과장 고일명 : 예, 농협은 1년치가 아니고 4개월치입니다.

금년에 출장소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8개월치는 계상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10평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희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표준액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상폭을 넓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 재무과장 고일명 :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이나, 식당 이런 것은 과세표준액하고 건물은 과표를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그 사용료를 그렇게 산출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짹짹하게 재미를 보면서도 적은것 같다,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아니고 어디는 그것도 조금 인상되는 것도 어렵다고 아주 짜증스럽게 표현하는데도 많습니다.

○ 이재희 위원 : 표준지가, 과세시가, 그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슨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고일명 : 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과세시가 표준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농산물 소득금액에 15%를 적

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소득금액에 15%를 적용한 그런 사용료하고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사용료하고, 그 둘 중에 적은 것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같은 경우에는 묵은 땅도 지금 많고, 옛날 같으려는 서로 경작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학교를 가보면 매점이 임대기간도 다 만료되고 그렇지만 그 교장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오래 계시는게 아니고 2,3년만에 교체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기가 다 지나서 내보내야 될 성질인데도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뒤편하고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더러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데는 수수료를 많이 올려가지고 못건다면 자동적으로 나가면 여러가지로 좀.....

○ 재무과장 고일명 : 참고로 제가 한 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고등학교가 금년도에 189만6천원을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구내식당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365만2,930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도 올랐고, 또 금년에는 공시지가에 3%를 적용했습니다, 임대료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5%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사용료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이재희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것은 많이 걷을 수 있으면 많이 걷어 주십시오 하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김광수위원 동시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 말씀하시지요.

○ 김사수 위원 : 부의장님 먼저...

○ 의장 김영세 : 예, 김광수 부의장님.

○ 부의장 김광수 :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먼저 기계공고, 어제 그 현장을 돌아보고 와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몇 평이 되는지 그 예정지 실태를 보고 와서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기계공고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사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청주기계공고에 매각해야 할 실제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시가로 팔려는 그 액수가 정확하게는 못 합니다만,

얼마가 나오게 되는지, 그것을 팔아 가지고서 여기 2만7,246평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132억4,729만2,940원이라는 소요액이 나왔는데, 이 소요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부지를 사는 금액, 그것을 얘기를 한건지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15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가경고등학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마는 4천7백평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모양이 정사각형을 증학교하고 나눠서 보니까, 직사각형이 됐는데 학교가 그렇게 들어서도 괜찮을 것인지, 또는 인문고등학교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지금 그다음에 임대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나는 그 임대관계를 볼 것 같으면, 1페이지 큰 2번에 그 3항에 유상사용허가라고 해서 토지가 384건에 그 금액으로 봐서 8천26만2천원 받게 되어있고, 건물이 59건에 2천287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받고, 해당 교육청에서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받아지는 돈은 전부 교육청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계약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건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매각 실평수가 대략 얼마나 되느냐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옛날에 교육위원회로 쓸 당시에 그 철책 폐쇄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까지 정도만 매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는 만평 조금 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측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 시가가 얼마가 되는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여름경에 대충 얼마나 갈 건가 하는 것을 복덕방에 알아 봤습니다.

그때 평당 약 2백 3십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해서 만 5,6백평을 판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한 2백 4,5십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금 대장가격으로 한 2십억 정도 되는데, 또 그런 정도 받는 걸로 보려는 저희가 당초 이전계획을 할 때에는 2백 7십억 내지 8십억을 잘 하면 받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서 부지매입 하는데 얼마를 쓰고, 시설하는데 얼마 쓴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 본 일이 있습

니다.

그리고 소요액은 마침 금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다마는 실지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를 다 해박야 알겠습니다. 다마는 건축하는데 한 6십억 내지 8십억이 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시설관계, 이런 것은 확실하게 얼마가 소요될지 지금 계산된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5십억원이 계상된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5십억 4천만원은 기계공고 이전 부지매입비하고 가칭 가경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경고등학교 부지가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남, 북으로 끊다보니까, 직사각형이 됐는데 이게 적절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사각형으로 된 바로 반쪽에 지금 가경중학교 건물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만 잘 배치를 할 것 같으려는 직선거리 백미터 코스도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계고등학교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같아서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작년에도 청주시내 인문계 학급을 한 4,5 학급 즐였고, 금년에도 7학급을 즐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어제 간담회때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소간 줄이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청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가며는 다시 학교를 신설 해야될 요인이 충분히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이 개발을 해 놓고 공공기관용지 등으로 사용할 예정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도 저희더러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 봄에 저희가 매입을 했으려는 13억원 남짓하려는 매입이 됐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따지니까 15억6천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 1월가면 또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도 아무리 토개공에서 개발한 토지라도 지가 상승이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확보를 빨리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된겁니다.

그리고 유상사용허가 토지·건물 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허가에 대한 계

약은 청·소의 장이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각 교육청같은 거기서 취득·처분까지도 교육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국민학교장, 중학교장, 고등학교장 공히 사용허가는 청·소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액수를 8천만원, 2천2백만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액수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규에 뒤는 어떻게 무슨 요율을 적용해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 등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입을 할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을 해야 하고, 팔때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액수가 좀 큰 것은 입찰에 붙이게 되겠지요.

사용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표를 적용하던, 그 소득금액을 적용하던, 소득금액도 산출하는 것이 도지사가 1년에 두번 필요경비율을 산출해가지고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벼농사를 짓는데 300평 벼농사를 지으면 수입액이 38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4만8천원, 그래서 소득금액이 300평당 13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

다.

이 13만3천원이 소득금액인데, 이것에 15%를 사용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로 따진 것이 이것보다도 더 적을 때에는 과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일 경우에는 평당 67원을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고추농사를 지었을 때는 42원이고, 무우 농사를 지었을 때는 56원을 받으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토지 유상사용허가라고 하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대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부의장 김광수 : 임대수입이 될 것 같으면 계약은 학교장이 하고 감독을 하더라도 이 수입은 들어오는게 아니냐, 그겁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누가 토지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가 든다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 인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경고등학교 예를 든다고 할 적에 4천7백평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샀을 것 같으면 13억원이요, 또는 연말에 사계되며는 15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이것

을 지금 청주시내도 매년 학급수가 줄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학급수가 는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학급수가 줄고 있는데.....

○ 재무과장 고일영 : 지금 저희는 당초에 기계공고 이전 부지에 3개학교 정도를 거기다가 이전을 할 계획을 세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십만원 정도면 살걸로 보고 4만평 확보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저희는 증양고등학교의 예능과도.....

○ 부의장 김광수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가경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가경고등학교 4천7백평, 거기에 인문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시책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인문고등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하고 반반해서 실업고를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현재 인문고등학교 학급이 줄어가는데 인문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지금 당장에 학교를 신설한다는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에는 인문고를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내.....

○ 부의장 김광수 : 즉, 부지만 사농는다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우선 확보를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부지만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부지 확보해 놓고서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건 그렇지요.

○ 의장 김영세 : 예, 배경은 전 재무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전 재무과장님이 한번 설명하시죠?

지금 행정과에서 그 학교 신설계획을 다루고 있으니까.....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눔)

○ 행정과장 엄갑도 : 예, 행정과장 엄갑도입니다.

학교설립, 계획은 저희 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학교 장기수용계획과, 고등학교 장기수용계획, 학생증가 추이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에 저희들 중학교 전체 수용계획이 2만4천742명, '92년도에 가면

2만6천374명, '93년도에는 가면 2만5천787명, 이런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중학교 학생수가 지금 현재보다 한 2천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고등학교에 가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91년도에 2만3천950명 정도, 저희들 도내 고등학교 진학율이 평균해서 97%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산출로 잡았을때, '91년도 현재 2만3천950명이고, '92년도에 가면은 2만5천556명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 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가면 2만5천명, '94년도 2만명, 그래서 2만5천명 수준에서 거의 머물다가 '96년도쯤 가면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보는 것은 도내 전체 숫자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내는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급격하게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 청주인구를 2천년대까지 가며는 약70만명 이상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가경고등학교 예정부지 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10년전에 전체 청주시에 학교 늘어나는 계획에 의해서 학교 부지를 그때는 가경여교로 잠정적으로 잡았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개공 사업할때 그 부근에 학교부지를 마련해 주시요 하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경여고 부지로 해서 9천7백평을 전체 토개공에서 저희들 학교용지로 잡아 주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청주시내도 변화가 많이 생겨서 갑자기 가경여고 설립할 요인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줄어가지고 대신 중학교 학생 수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그 자리에 반은 9천7백평중에서 약5천평은 중학교용으로 해서 작년 매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공사중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학교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당장은 고등학교 설립요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내에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볼 때에는 늦어도 2년 후에는 또 고등학교 설립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해 두었던 토지를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그런 예정이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답변되었습니까?

○ 김광수 위원 : 네.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위원석에서)

○ 김사수 위원 : 부의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하셔서.....

○ 의장 김영세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 하시지요.

○ 박병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5억원 이상 3천평이상 중요재산에 관한 문제는 여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저희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진천농고의 목장, 도서관, 여러가지 해서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재산 부분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도 중요재산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되었던, 이것보다 더 간편하게 하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교육위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가 보지 않더라도 중요재산에 관한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그와 동시에 진천농고 목장에 관한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속하는 어떤 토지며, 이것이 시내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이게 정말 활용가치가 없는 것인지, 또 농고학생들의 수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눔)

○ 재무과장 고일영 : 진천농고 제1목장용지 매각은 평수로 하려는 약7만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2목장이 학교에서 3키로 떨어진데에 만4천평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1목장은 학교에서 9키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목장을 거쳐서 제1목장, 처분하려고 하는데를 가려면 거기서 약6키로를 더 가야 되는데 아주 도로가 비포장이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작년, 제작년부터 이것을 매각해서 제2목장에다가 부자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을 할려고 공고까지 했다가 응찰자가 없어서, 이 매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할 때에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왜 매각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진천농고에 축산과 내년 모집정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4명밖에 없어도 타과에서 탈락한 사람을 채워 넣으면, 잘하면 정원까지는 채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원을 채워도 축산과 학생, 재학생 52%가 청주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할 의지가 있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고,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당초에 제1목장을 조성할 때에는 축산과가 2학년씩 6학급이 확보되어 있었고, 정원도 다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줄어가지고 3학년이 2학급이고, 1학년, 2학년이 1학급씩 되겠는데, 내년도 1학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7만천평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초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한 4만5천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사가 한 40도 이상되어서 굉장히 이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초지로써 적합한 경사는 약15도 정도가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2목장은 아주 이상적인 15도 정도 되는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제1목장은 경사가 가파르고 여러가지 조건도 맞지 않고, 또 상당히 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제2목장 있는 데에다가 시설부자를 충분히 해달라 그

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본 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겁니다.

○ 의장 김영세 : 답변 되었습니까?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또 질의 하실 분.....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청주공고 부지를 약90% 이상이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43만원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은 얼마 나와 있으며, 그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12페이지에 보려는 음성도서관 건물 유상사용 허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권위원님 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부지 매입관계는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매수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격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

○ 권혁풍 위원 : 43만원이.....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 용암택지개발 그 문제 때문에 가격관계가 늘 보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승낙을 해놓고서도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계약관계도 지금 매수협의를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정도로 수월하게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지금 의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도서관 유상사용허가, 이것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 구내매점입니다.

○ 권혁풍 위원 :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 재무과장 고일영 : 도서관 안에 있는 지하실을 아마 10평 정도를 매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권혁풍 위원 :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고일영 : 예.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통과는 3호의안, 4호의안 각각 분리해서 통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3호의안인 도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호의안인 도유재산취득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호의안인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4호의안인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이제 1991년도 교육위원회도 마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2일 개원해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의결과, 대집행기관감사, 교육감선출등 큰 일을 무리없이 잘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92년에도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제6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5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

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
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6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1.12.11-12.12(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 11(수) 10:30 (1차본회의)	※ 개 회 1. 제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의안상정 및 제안설명(제1호의안 의결) ○ 제1호의안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2호의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3호의안 도유(교육)재산 취득(안) ○ 제4호의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기: 12. 11 -12. 12. (2일간)
12. 12(목) 10:30 (2차본회의)	1. 의안의결 ○ 제2호의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 제3호의안 도유(교육)재산취득(안) 의결 ○ 제4호의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폐 회	

(별첨 2)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
----------	---

제출년월일 : 1991. 11. 2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골자

국고보조금 9,352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500천원 등 총 세입재원 11,852천원이 발생하여 이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제2회추경에 편성 확정된 경주권역 학교제비지 부지매입비 150억4,962만8천원중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80억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함.

3. 예산안 : 별첨

4. 예산편성 참고자료 : 별첨

(별첨 3)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
--------	--------	---

제출년월일 : 1991. 11.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 사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있어 응시수수료를 2,000원으로 하여 왔으나, 그 수수료만으로는 동 시험 시행 경비를 확보할수 없어 해마다 소요 예산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및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가.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원을 20,000원으로 변경함.

3. 개정 근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1991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604호) 제21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신, 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
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인당 2,000원" 을 "1인당 2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수수료 징수) 충청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u>2,000원</u> 의 응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1인당 <u>20,000원</u> 의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u>

참 고 자 료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서류

0.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부분발췌 : 교육부령 제604호. 1991. 10. 6)
0. 공고문(입법 예고) 사본 : 별첨
0.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예산자료 : 별첨
0. 타시.도 응시수수료 대비표 : 별첨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부분발췌)

(1991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604호)

제21조(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 타

◎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121호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에 있어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년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1. 법령제명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수수료징수에 대하여 1인당 2,000원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제도로는 동시험 시행 경비를 확보할 수 없이 수익자 부담원칙 및 해당 경비 확보 측면에서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에 따라 1인당 20,000원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예산자료

(단위 : 천원)

년 도	학교급별	응시인원	수수료징수액 (1인당 2,000원)	집행액	1인당 평균집행액	비 고
1991	유치원	335	670	6,951	21	
	초 등	161	322	7,105	44	
	중 등	1,199	2,398	25,666	22	

시·도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

시·도별	현행	개정(안)	비고
서울	2,000원	20,000원	개정
부산	"	"	추진중
대구	"	"	개정
인천	"	"	개정
광주	"	"	추진중
대전	"	18,000원	개정
경기도	"	20,000원	개정
강원	"	"	추진중
충남	"	"	추진중
전북	"	"	추진중
전남	"	"	추진중
경북	"	"	추진중
경남	"	"	추진중
제주	"	"	추진중

(별첨 4)

도유(교육)재산취득(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1991. 11. 2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청주권역 공업계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부지 및 가칭 가경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치 : 1) 청주기계공고 - 청주시 가경동 산 105 - 1 번지의 54 필지

2) 가경고 - 청주시 가경동 753번지 1필지

나. 면적 : 1) 청주기계공고 - 90,072㎡ (27,246평)

2) 가경고 - 15,537.7㎡ (4,700평)

다. 소요액 : 13,247,292,940 원

라. 예산액 : 15,049,628,000원

3. 제안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호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4. 도유(교육)재산취득(안) : 별첨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도유(교육)재산취득(안)

1.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소 계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지적	비 고	
청주시 가경봉	292-5	전	1,736	1,736	청주시계공고	
	292-6	"	377	377		
	292-7	"	126	126		
	292-8	"	186	186		
	292-3	"	774	774		
	292-4	"	585	585		
	294-1	"	2,975	2,975		
	산101-1	입	7,835	7,835		
	666	전	1,782	1,782		
	693-5	"	1,262	1,262		
	317-5	"	268	268	일부 "도"	
	산103-1	입	1,293	1,293		
	690	담	1,484	1,484		
	691	전	1,002	1,002		
	294-2	"	3,535	2,180		
	산98-2	입	893	893		
	산98-3	"	309	309		
	292-11	전	1,174	1,174		
	산103-8	입	488	488		일부 "전"
	산103-6	"	572	572		
292-1	전	813	813			
693-7	"	277	277			
산103-10	입	1,223	1,223	일부 "전"		
산100-2	"	2,421	2,421			

소 계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지적	비 고
청주시 가경동	산102-1	임	2,182	2,182	
	289	전	631	631	
	290	"	1,137	1,137	
	291	"	3,041	3,041	
	292	묘	2,549	2,549	
	292-2	전	228	228	
	293	"	1,191	1,191	
	310-1	과	992	992	
	310-9	"	2,607	2,607	
	310-10	"	1,487	1,487	일부 " 대 "
	310-12	"	2,838	761	
	310-15	"	1,349	1,349	
	689	묘	433	433	
	693	전	635	635	
	산103-9	임	1,550	1,550	일부 " 전 "
	693-3	전	139	139	
	산103-11	임	1,411	1,411	
	산99-2	"	4,008	4,008	
	310-22	과	2,473	2,473	일부 " 대 "
	310-18	"	992	992	
	산105-1	임	15,114	15,114	
	산105-6	"	997	997	
	692	전	250	250	
	692-2	"	469	469	
	694	"	1,395	1,395	
	695	담	6,376	6,376	
	693-1	전	1,319	1,319	
	667	"	1,326	1,326	
	693-2	전	417	417	

소 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지적	비 고
청주시 가경동	317-3	전	264	264	일부 " 도 "
	317-4	"	314	314	일부 " 도 "
소계 55 필지				90,072	
청주시 가경동	573	학	15,537.7	15,537.7	가경고
소계 1 필지				15,537.7	
합 계	56 필지			105,609.7	

2. 취득목적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부지 및 가경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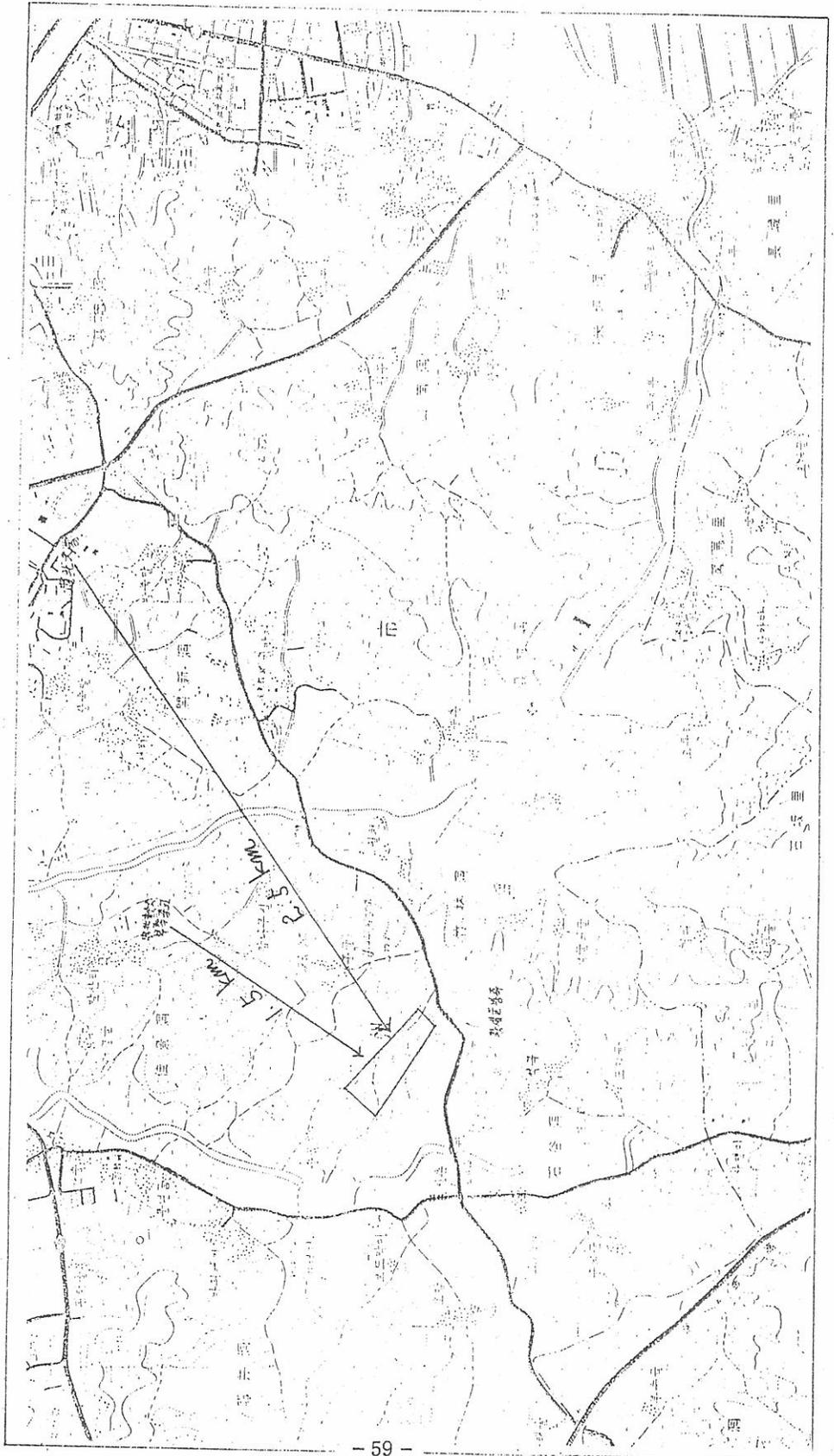
3. 참고사항 : 가. 지적도 2부.

나. 위치도 1부.

위 치 도 (천주기계광고)

0 충북대 남서측 약 2.5 km

0 충북대 부속중학교 남서측 약 1.5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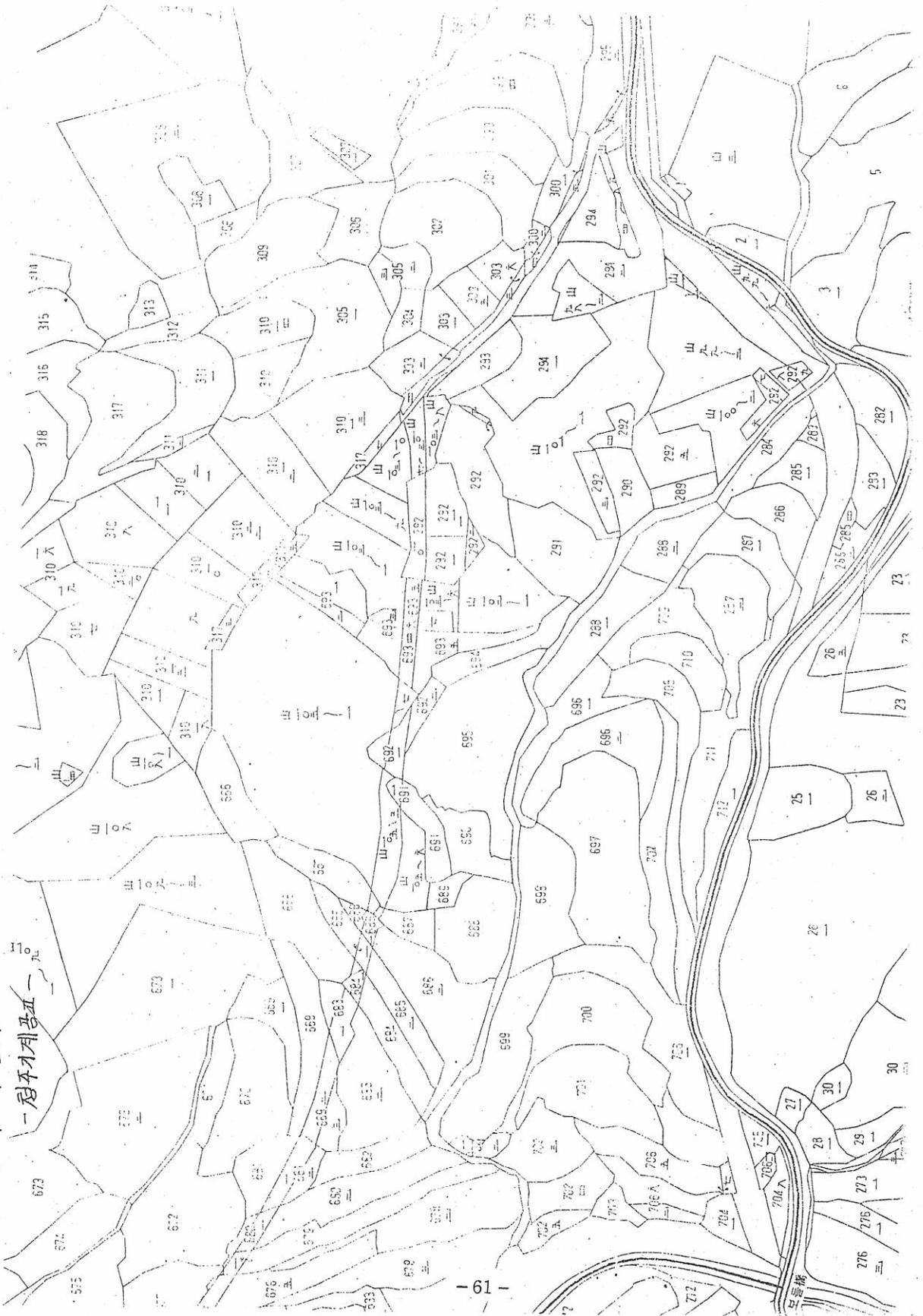


가림(위치)도
(가림도)



<지적도>

정주계공포



관 계 법 령 발 책 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호 제1항 제5호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중요재산)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 이라함을 지방계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물 채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3. 제1호의 제2호와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별첨 5)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번	안 호	4
--------	--------	---

제출년월일 : 1991. 11.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92년도 도유(교육)재산의 취득, 처분 및 사용허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동계획(안)을 확정 공유재산관리에 적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본청 및 하급교육청

나. 계상내역

1) 취득

- 토지 : 61필지, 109,519.7㎡, 13,270,635천원
- 건물 : 93동, 27,087.07㎡, 10,545,111천원
- 공작물 : 3식, 105,500천원

2) 처분

- 토지 : 36필지, 282,264.8㎡, 1,712,241천원
- 건물 : 43동, 28,213.78㎡, 2,379,863천원
- 공작물 : 26식, 55,579천원

3) 유상사용허가

- 토지 : 384건, 416,648.38㎡, 80,262천원
- 건물 : 59건, 5,974.37㎡, 22,870천원

4) 무상사용허가

- 토지 : 16건, 79,935㎡
- 건물 : 15건, 31,800.52㎡

3. 제안근거

- 지방제정법 제77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92.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별첨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본청	중요재산	토지 (취득)	청주기계공 고	청주기계공고 이전부 지 매입	90,072	11,677,293	학교이전
	"	"	가경고(가칭)	학교설립 부지매입	15,537.7	1,570,000	학교설립
	소 계			56 필지	105,609.7	13,247,293	
중요재산	건물 (취득)	종합야영장	숙박동 및 생활관신축	1,624.2	623,500	91이월사업	
"	"	체육고	교사 신축	1,486	580,000	"	
기타재산	"	본 청	관사분양취득(아파트)	84.17	64,500	"	
"	"	단체교육원	강의동 증축	514.8	281,000	"	
"	"	청주농고	종합실험실 신축	1,251	403,020	"	
"	"	"	식당 신축	248	116,000	"	
"	"	"	농업박물관 신축	380	228,122	"	
"	"	미원공고	교실 신축	90	27,000	"	
"	"	"	실습실 신축	786	328,749	"	
"	"	제천여고	강당 신축	828.74	400,000	"	
"	"	충주고	과학관 증축	247.7	100,000	"	
"	"	주덕고	화장실 신축	27	38,000	"	
"	"	청산고	사택 신축	45.6	23,000	"	
"	"	해원학교	급식소 신축	345.15	138,300	"	
"	"	"	가스저장고 신축	3.78	1,300	"	
"	"	해화학교	급식소 신축	161.28	35,220	"	
"	"	"	가스저장고 신축	3.78	1,300	"	
소 계				17 동	8,127.2	3,389,011	
기타재산	공작 물 (취득)	청주농고	수경재배 온실 신설	1 식	85,500	91이월사업	
"	"	제천농고	교문 신설	1 식	8,000	"	
"	"	"	담장 신설	1 식	12,000	"	
소 계				3 식	105,500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블량	금액	사유
	중요재산	토지 (처분)	청주기계공 고	학교부지 매각	37,269.8	1,382,729	학교이전
	"	"	진천농고	제1목장 용지 매각	235,734	89,756	목장이전
	기타재산	"	광혜원고	택지사업 편입	63	5,103	91이월사업
	"	"	미원공고	도로 편입	181	2,316	"
	소 계			13 필지	273,247.8	1,479,904	
	중요재산	건물 (처분)	청주기계공 고	건물 매각	21,048.33	2,028,991	학교이전
	"	"	진천농고	"	1,071.75	61,214	목장이전
	소 계			29 동	22,120.08	2,090,205	
	기타재산	공작물 (처분)	청주기계공 고	공작물 매각	23 식	24,787	학교이전
	"	"	진천농고	"	1 식	28,292	목장이전
	"	"	제천농고	교문 철거	1 식	115	도로편입
	"	"	"	담장 철거	1 식	2,385	"
	소 계				26 식	55,579	
기타재산	토지	본청외26교	유상사용허가(48건)	14,430.66	25,256	목록별점	
"	건물	본청외17교	유상사용허가(22건)	3,043.4	9,826	"	
소 계			70 건	17,474.06	35,082		
기타재산	토지	옥천공고	무상사용허가(1건)	302		옥천군수	
"	건물	본 청	무상사용허가(1건)	3,689.52		교원대총장	
소 계			2 건	3,991.52			
합 계	취 득	토지	2 교	56 필지	105,609.7	13,247,293	
		건물	12 교	17 동	8,127.2	3,389,011	
		공작물	2 교	3 식		105,500	
		계			113,736.9	16,741,804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합	처분	토지	4 교	13 필지	273,247.8	1,479,904	
		건물	2 교	29 등	22,120.08	2,090,205	
		공작물	3 교	26 식		55,579	
		계			295,367.88	3,625,689	
	유상사용 허가	토지	27 교	48 건	14,430.66	25,256	
		건물	18 교	22 건	3,043.4	9,826	
		계			17,474.06	35,082	
무상사용 허가	토지	1 교	1 건	302			
	건물	1 교	1 건	3,689.52			
	계			3,991.52			

92. 교육청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 교 명	사 업 명	물 량	금 액	사 유	
청주	중요재산	(취득)	우암국	교실개축	2,070	662,400	92시설사업 계획	
	"		산남국	교실증축	720	816,000	91이월사업	
	기타재산		운천국	휴게실신축	90	3,000	92시설사업 계획	
	"		덕성국	"	90	3,000	"	
	"		금천국	화장실개축	90	56,000	"	
	"		흥덕국	"	45	39,000	91이월사업	
	"		교동국	휴게실신축	90	3,000	92시설사업 계획	
	"		청주중	교실증축	180	57,600	"	
	"		주성중	"	270	86,400	"	
	"		청주남중	"	360	115,200	"	
	"		청주동중	"	400	144,000	"	
	"		증양중	"	270	86,400	"	
	"		서원중	"	90	28,800	"	
	"		청운중	"	720	230,400	"	
	"		청주여중	"	90	28,800	"	
	"		증양여중	"	450	144,000	"	
	"		"	"	화장실증축	45	39,000	91이월사업
	"		"	가경중	교실신축	1,080	345,600	92시설사업 계획
	"		"	덕별국	교실증축	180	54,000	91이월사업
	"		"	봉정국	"	540	162,000	"
"	"	강서국	"	450	135,000	"		
"	"	창신국	"	540	162,000	"		

(단위: m²/천원)

기관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기타재산	건물 (취득)	금천국	교실증축	1,080	324,000	91이월사업
	"	"	용담국	"	540	162,000	"
	"	"	석교국	휴게실신축	90	3,000	92시설사업 계획
	"	"	가경국	교실증축	90	27,000	91이월사업
	"	"	울량국	"	540	162,000	"
	소계			27 동	11,250	4,079,600	
	기타재산	건물 (처분)	한별국	교실철거	1,852.89	118,477	교실개축
	"	"	우암국	"	2,168.60	71,212	"
	소계			2 동	4,021.49	189,689	
	기타재산	토지	주성중외19 교	유상사용허가(39건)	39982.84	12,905	목록별첨
"	건물	석교국외18 교	유상사용허가(21건)	906.87	3,426	"	
소계			60 건	40889.71	16,331		
충주	기타재산	건물 (취득)	삼원국	교실개축	1468.8	463,800	92시설사업 계획
	"	"	주덕중	"	91.8	28,800	"
	"	"	수안보중	사택신축	49.5	24,500	"
	"	"	양성중	"	49.5	24,500	"
	"	"	중앙국	교실및변소증축	948.24	374,000	91이월사업
	"	"	충일중	교실증축	275.4	81,000	"
	"	"	예성여중	"	183.6	54,000	"
	소계			8 동	3066.84	1,050,600	
	기타재산	건물 (처분)	주덕중	교실철거	247.9	10,353	교실개축
소계			1 동	247.9	10,353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 교 명	사 업 명	블 랑	금 액	사 유
	기타재산	토지	교현국의외15교	유상사용허가(26건)	30,767.3	6,854	목록별첨
	"	"	교 육 청	무상사용허가(2건)	1,707		증주 증원
제천	기타재산	토지 (취득)	봉 양 중	사유지 매입	1,087	6,588	정구장부지
	"	"	입 석 국	"	333	7,000	사택부지
	"	"	동 명 국	"	35	2,331	사택부지
	소 계			3 필지	1,455	15,919	
	기타재산	토지 (취분)	수 산 중	도로편입 예정지	2,227	44,540	도로편입
	"	"	의 립 국	불용지 매각	163	48,900	불용토지
	"	"	봉 양 국	"	1,532	30,640	"
	소 계			12 필지	3,922	124,080	
	기타재산	토지	교 육 청 의 11 교	유상사용허가(44건)	49,363	5,054	목록별첨
	"	건물	수 산 중 의 3 교	유상사용허가(4건)	624.74	2,999	"
소 계			48 건	49,987.74	8,053		
청원	기타재산	건물 (취득)	분 의 중	화장실 증축	28	21,000	92시설사업 계획
	소 계			1 동	28	21,000	
	기타재산	토지 (취분)	금 관 국	불용지 매각	555	10,752	불용토지
	"	"	분 의 중	"	285	21,000	"
	소 계			2 필지	840	31,550	
	기타재산	토지	남 성 국 의 22 교	유상사용허가(24건)	78,585.8	6,261	목록별첨
	"	건물	육 산 국 의 1 교	유상사용허가(2건)	59.46	193	"
소 계			26 건	78,645.26	6,454		

(단위: m²/천원)

기관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중요재산	토지	월곡국	무상사용허가(1건)	61,961		교원대
			월곡국외2교	무상사용허가(8건)	6,939		교원대지서
	기타재산	건물	월곡국	무상사용허가(9건)	1,986		교원대
	소계			18건	77,340		
보은	기타재산	건물(취득)	삼산국	교부실 증축	275.4	86,400	92시설사업계획
	"	"	관기국	사택신축	66	23,000	"
	"	"	사직국	"	66	23,000	"
	"	"	수한국	"	66	23,000	"
	"	"	중초국	"	66	23,000	"
	"	"	회남국	"	66	23,000	"
	"	"	보덕중	"	66	23,000	"
	"	"	세중국	창고신축	50	10,000	"
	소계			8동	721.4	234,400	
	기타재산	토지	삼산국외11교	유상사용허가(24건)	13,330.28	1,790	목록별첨
"	건물	내북중외1교	유상사용허가(2건)	81.28	165	"	
소계			26건	13,411.56	1,955		
기타재산	토지	법수분교	무상사용허가(3건)	7099		교원대	
"	건물	"	무상사용허가(5건)	825.1		"	
소계			8건	7924.1			
옥천	기타재산	건물(취득)	이원국	교실개축	202.5	128,000	92시설사업계획
	"	"	대성국	교실 및 사택개축	248.1	158,000	"
	"	"	옥천여중	사택신축	45.6	30,000	"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 교 명	사 업 명	물 량	금 액	사 유
	소 계			4 동	496.2	316,000	
	기타재산	건물 (취분)	이 원 국	교 실 철 거	202.5	7,696	교실개축
	"	"	대 성 국	교실및 사택철거	241.5	8,045	교실및사택 개축
	"	"	육천여중	사 택 철 거	46.3	30	사택 개축
	소 계			4 동	490.3	15,771	
	기타재산	토지	교육청외12 교	유상사용허가(16건)	14,246.5	3,574	목록별첨
	"	건물	육천여중외 4교	유상사용허가(5건)	839.6	4,919	"
	소 계			21 건	15,086.1	8,493	
	기타재산	토지	청 산 국	무상사용허가(1건)	1,927		청산면
영동	기타재산	건물 (취득)	봉 산 국	교 실 개 축	848	256,000	92시설사업 계획
	"	"	양 강 국	사 택 산 축	49.5	30,000	"
	"	"	황 간 국	"	49.5	30,000	"
	"	"	노 송 국	사 택 개 축	49.5	30,000	"
	"	"	용 분 중	화장실 개축	40.5	45,000	"
	"	"	영 동 중	사 택 신 축	49.5	30,000	"
	소 계			6 동	886.5	421,000	
	기타재산	토지 (취분)	교 육 청	불용지 매각	1,478	7,041	불용토지
	"	"	이 수 국	"	212	21,200	"
	소 계			3 필지	1,690	28,241	
	기타재산	건물 (취분)	봉 산 국	교 실 철 거	648	26,664	교실개축
	"	토지	용암국외9 교	유상사용허가(22건)	26,509	3,231	목록별첨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전천	기타재산	토지 (취득)	두촌분교	사유지 매입	168	3,193	학교부지
			은탄분교	교환취득	2,287	4,230	교환
	소계			2 필지	2,455	7,423	
	기타재산	토지 (처분)	은탄분교	교환처분	1,000	4,150	교환
			상산국	불용지 매각	334	10,020	불용토지
			옥동국	"	672	5,376	"
			만승국	"	275	27,500	"
			초평국	"	284	1,420	"
	소계			6 필지	2,565	48,466	
	기타재산	토지	상산국의8교	유상사용허가(23건)	33,716	4,950	목록별첨
연곡분교			유상사용허가(1건)	346	766		
소계				24 건	34,062	5,716	
괴산	기타재산	건물 (취득)	청천중	강당신축	605.76	236,800	91이월사업
			소계			1 동	605.76
	기타재산	토지	명디국의12교	유상사용허가(18건)	19,005	1,572	목록별첨
음성	기타재산	건물 (취득)	무곡국	사택개축	53.14	28,000	92시설사업 계획
			용천국	"	53.14	28,000	"
			감곡국	교실및 사택증축	215.14	88,600	"
			월당국	사택개축	53.14	28,000	"
			대소국	사택및계단실증축	117.94	56,800	"
			대강국	계단실증축	81	28,800	"
			부운국	변소개축	40.5	31,800	"
			삼성중	교실및계단실증축	486	143,200	"
			감곡중	사택개축	54.27	28,000	"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소계			11 동	1154.27	461,200	
	기타재산	건물 (취분)	무극국	사택철거	39.66	3,176	사택개축
	"	"	용천국	"	49.59	285	"
	"	"	대소국	"	26.46	34	"
	"	"	원당국	"	49.5	1,976	"
	"	"	삼성중	교실 및 계단철거	468	40,390	교실개축
	"	"	감곡중	사택철거	52.8	1,320	사택개축
	소계			6 동	686.01	47,181	
	기타재산	토지	수봉국외15교	유상사용허가(51건)	76,226	8,345	목록별첨
		건물	음성도서관	유상사용허가(1건)	33	180	
	소계			52 건	74,259	8,525	
단양	기타재산	건물 (취득)	매포국	휴게실및강의실증축	82.5	31,800	92시설사업 계획
	"	"	단천국	사택신축	118.8	65,000	"
	"	"	금곡국	"	59.4	32,500	"
	"	"	별방국	"	59.4	32,500	"
	"	"	매포국	"	59.4	32,500	"
	"	"	단성중	교실,교무실 증축	259.2	86,400	"
	"	"	"	사택신축	56.1	27,400	"
	"	"	매포중	"	56.1	27,400	"
	소계			10 동	750.9	335,500	
	기타재산	토지	교육청외9교	유상사용허가(49건)	20486	470	목록별첨
	"	건물	매포중	유상사용허가(1건)	40.02	396	
	소계			50 건	20526.02	866	

(단위: m²/천원)

기관 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합	취득	토지	5 교	5 필지	3910	23,342		
		건물	67 교	76 동	18,959.87	7,156,100		
		계			22,869.87	7,179,442		
	처분	토지	12 교	23 필지	9017	232,337		
		건물	13 교	14 동	6,093.7	289,658		
		계			15,110.7	521,995		
	유상사용 허가	토지	154 교	336 건	40,2217.72	55,006		
		건물	35 교	37 건	2,930.97	13,044		
		계			40,5148.69	68,050		
	계	무상사용 허가	토지	6 교	15 건	79,633		
			건물	2 교	14 건	28,111		
			계			107,744		
총 계	취득	토지	7 교	61 필지	109,519.7	13,270,635		
		건물	79 교	93 동	27,087.07	10,545,111		
		공작물	2 교	3 식		105,500		
		계			136,306.77	23,921,246		
	처분	토지	16 교	36 필지	282,264.8	1,712,241		
		건물	15 교	43 동	28,213.78	2,379,863		
		공작물	3 교	26 식		55,579		
		계			310,478.58	4,147,683		
	유상사용 허가	토지	181 교	384 건	416,648.38	80,262		
		건물	53 교	59 건	5,974.37	22,870		
		계			422,622.75	103,132		
	계	무상사용 허가	토지	7 교	16 건	79,935		
			건물	3 교	15 건	31,800.52		
			계			111,735.52		

92. 기관별 유상사용허가 내역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추정사용료	용도
본청	청주시 산남동	4-11	철.콘.슬	634	2,249	구내식당
	"	"	"	66	55	농협출장소
	청주시 미평동	8-16	임	36	48	주택부지
	"	"	"	18	24	"
	"	6-1	"	14	18	"
증양도서관	청주시 사직 2동	38-5	철.콘.슬	637.5	2,400	구내식당
단재교육원	가덕면 상야리	217	"	20	118	구내매점
청주고	청주시 북대동	869	시.벽.스	454.5	1,740	구내식당
충부고	청주시 분평동	233	조립식	546.88	1,896	"
청주여고	청주시 읍량동	534	"	218	834	"
증양고	청주시 사창동	227	연.슬	463.16	1,672	"
충부상고	청주시 사천동	236-1	시.벽.스	384	1,866	"
금천고	청주시 금천동	4-6	조립식	243.6	635	"
청주기공	청주시 영동	87-6	학	1008.8	5,145	교육회부지
청주농고	청주시 내덕동	322	"	486	1,458	주택부지
	청주시 수동	산 2	임	1,256	230	증계탈부지
충주고	충주시 호암동	558	콘.샌트	696.36	1,812	구내식당
	"		학	240	720	주택부지
예성여고	"	526-1	"	4,700	3,900	자재야적
제천고	제천시 청전동	산23-1	시.벽.스	218	970	구내식당
	" 교동	88-2	학	185.44	909	주택부지
제천농고	" 동현동	35-59	"	18	59	"
옥천고	옥천읍 삼양리	115-4	시.벽.스	216	480	구내식당
영동고	영동읍 계산리	72-7	학	10.9	42	주택부지
음성고	음성읍 읍내리	503-7	철.콘.슬	264.46	1,190	구내식당
보은농고	보은읍 교사리	100-1	학	558	351	주택부지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추정 사용료	용도
단양고	단양읍 도전리	324	조립식	334.08	1,764	구내식당
보은여고	보은읍 교사리	209	대	50	42	퇴비장
충주능고	충주시 봉방동	72	철.콘.슬	218.18	1,199	구내식당
괴산고	괴산읍 대사리	201	시.벽.슬	264.4	389	"
제원고	봉양면 팔송리	396-2	답	2,244	40	농경지
광산공고	제천시 고명동	703-9	"	453	6	"
제천여고	서부동	80	조립식	316.8	784	구내식당
석교국	청주시 석교동	10	시.벽.스	17.5	135	"
중앙국	문화동	4	철.콘.슬	124.2	747	"
청남국	영은동	127	조립식	172.8	877	"
"	"	"	시.벽.스	33	99	이발소
"	"	"	학	37.6	147	공장
덕성국	율량동	665-7	시.벽.스	66	204	이발소
"	"	656-21	학	3,024.4	171	농경지
"	"	648-4	대	1,060.1	952	주택부지
남성국	분평동	219-1	철.콘.슬	208.8	502	구내매점
"	"	219-1	학	19,652	2,106	농경지
서원국	북대동	977	시.벽.스	23.76	102	구내매점
모충국	모충동	372	"	24.95	200	"
은천국	은천동	543-7	"	34.56	249	"
내덕국	내덕동	61	"	42.24	200	"
금천국	청주시 금천동	213-1	시.벽.슬	179.04	880	구내매점
부일국	주흥동	428-1	학	495	118	주택부지
"	"	426	전	7,214	681	농경지
봉정국	봉정동		철.콘.슬	16	115	구내매점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교동국	청주시 수동	180	시.벽.슬	16.52	181	구내매점
	"	"	"	36.36	362	이발소
	"	산3	임	7,358	1,100	사찰,경작,
청주증	청주시 영동	8	시.벽.슬	247.5	1,410	주택부지
	"		학	66.12	793	구내식당
주성증	수동	133	복.와	71.4	363	이발소
	"	"	학	40	600	구내매점
청주남증	수곡동	124-3	시.벽.슬	27.56	231	이발소
청주동증	청주시 금천동	47-5	시.벽.슬	203.5	685	구내매점
서원증	가경동	486-3	조립식	232	711	"
봉명증	봉명동	1305	"	91.3	1,039	"
증양여증	사천동	229-5	시.벽.슬	74	370	"
교현국	충주시 교현동	424	대	271	335	주택부지
	연수동	72-1	과	2,083	93	농경지
목행국	목행동	248	학	2,385	1,008	주택부지
노은국	노은면 연하리	535-1	"	1,493.3	448	"
매현국	이류면 매현리	480	대	198	18	농경지
	문주리	793-1	전	7,361	410	"
야동국	소태면 야동리	487	학	2,853	273	대지
소태국	오량리	204-4	대	347	30	"
남산국	충주시 안림동	388-7	과	353	85	농경지
수안보국	상모면 은천리	116	답	872	90	"
	"	선 65	임	5,209	2,344	스키장도로
능암국	양성면 능암리	73	"	5,098	1,223	농경지
충주증	충주시 안림동	9-7	전	4,787	535	"
	"	산57-7	임	119	15	송전철탑
가금증	가금면 장천리	산57-7	"	338	15	농경지

(단위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제천교육청	제천시 와산동	191-1	임	86	28	농경지
	"	"	"	94	31	주택부지
	"	191-3	대	1,538	627	"
의림국	명동	59-4	"	116	223	화원
	의림동	47-4	학	162	257	매점부지
교육청	한수면 덕곡리	120-1	라멘조	15,142.67	2,703	연수원
흥광국	모산동	257	전	17,997	1,513	농경지
금성국	청풍면 장선리	460-1	학	2,645	95	"
덕산국	덕산면 도전리	422-2	대	203	16	"
백은국	백은면 병동리	595-2	학	2,551	193	"
	원월리	345-1	대	1,650	102	"
제천중	제천시 서부동	5-1	무조합석	160	276	구내매점
수산중	수산면 수산리	609-15	대	7,292	1,443	공업사부지
	"	"	시.벽.합	351.07	546	화대제작소
남성국	남성면 이곡리	15-1	답	7,151	928	농경지
산동국	귀래리	133	"	1,633	64	"
미원국	미원면 미원리	552-1	"	3,392	399	"
응곡국	응곡리	375-1	"	2,829	198	"
상야국	가덕면 상야리	129	"	816	154	"
남일국	남일면 쌍수리	411-3	"	1,522.8	335	"
신송국	신송리	406-1	"	4,513	338	"
남이국	남이면 대련리	253-1	학	401	74	주택부지
구암분교	구암리	241	답	1,521	142	농경지
부강국	부용면 금호리	산 43	임	3,305	130	"
의천국	의천리	141-1	학	2,181	117	"
강내국	강내면 다락리	367-2	답	3,634	269	"
	태성리	103-2	전	7,845	241	"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저산국	강내면 저산리	200-1	대	990	48	주택부지
강외국	강외면 오송리	60-16	학	241	85	"
공북분교	공북리	산69	임	4,755	213	주택및농경
옥산국	옥산면 오산리	215-4	대	153	77	주택부지
오창국	오창면 장대리	45	답	4,799	695	농경지
유리국	여천리	산98	임	3,646	299	"
북이국	북이면 내추리	2-3	전	11,996	874	"
석성국	내둔리	349	"	4,960	169	"
대길국	서당리	9-1	답	357	110	"
내수국	북일면 마산리	32-1	"	3,785	100	"
비상국	비상리	210-1	대지	513	61	주택부지
입동분교	입상리	421-2	답	772	101	농경지
옥산국	옥산면 호죽리	300-3	시.벽.스	26.4	58	주택부지
남이국	남이면 대련리	255	"	33.06	135	"
삼산국	보은읍 삼산리	122-2	대	294	448	"
속리국	외속리면 장내리	265-2	"	1,170	5,310	"
관기국	마포면 관기리	338-2	"	929	3,011	"
내북국	내북면 이원리	238-3	"	717	215	"
	"		시.벽.스	35	3	주택
북암국	내속리면 상판리	226	답	3,712	201	농경지
탄부국	탄부면 사직리	151-3	"	160	24	"
학림국	보은읍 중동리	224-1	"	1,322	108	"
소여국	마포면 소여리	477-1	"	334	10	"
삼승국	삼승면 상가리	332	전	2,770	81	"
종곡국	보은읍 강신리	68-4	대	1,276	267	주택부지
내북중	내북면 화전리	5-1	시.벽.스	92.56	185	구내매점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옥천교육청	옥천읍 삼양리	222-217	답	13	165	주택부지
안남국	안남면 연주리	379-2	학	416	29	"
이원국	이원면 강청리	50-4	대	79	79	"
	지전리	456	답	957	136	농경지
응촌분교	안내면 응천리	160	학	200	12	주택부지
	"	"	시.벽.슬	51.1	221	주택
청산국	청산면 지정리	33-1	전	1,608	320	농경지
군서국	군서면 동평리	551	답	473	100	"
증약국	군북면 증약리	699-3	"	1,031	163	"
죽향국	옥천읍 죽향리	235-3	학	149	372	건물부지
추소분교	군북면 추소리	665	"	10,007	6,454	수련원
청산중	청산면 백은리	333-3	시.벽.스	39.8	170	주택부지
옥천여중	옥천읍 문정리	455-2	"	59.2	272	구내매점
응암국	황간면 응암리	670-1	답	5,461	491	농경지
응산국	응산면 한곡리	211	"	1,745	317	"
이수국	영동읍 계산리	522-5	대	212	636	주택부지
황간국	황간면 신흥리	192-8	전	4,025	301	농경지
추풍령국	황금면 추풍령리	404	답	1,528	158	"
매곡국	매곡면 노천리	49-7	대	1,214	152	"
상촌국	상촌면 물한리	605-2	전	4,120	249	"
양산국	양산면 가곡리	18-1	답	4,271	648	"
양강국	양강면 모동리	315-2	대	91	12	"
구강국	구강리	120	답	2,572	166	"
초강국	심천면 초강리	456-1	대	1,270	102	주택부지
상산국	진천읍 읍내리	364-2	대지	205	170	"
매산국	덕산면 산수리	465-1	학	1,200	183	농경지
학성국	이월면 증산리	414-1	답	25,511	3,522	"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학성국	이월면 장양리	452-4	학	246	39	주택부지
		노원리	465-2	대	407	46
만승국	만승면 광해원리	486-1	학	99	62	"
연곡분교	진천읍 연곡리	191-1	"	5,900	6,350	사암침구회
백곡중	백곡면 사송리	476-1	대	200	28	주택부지
진천여중	진천읍 성석리	343	학	294	119	"
괴산교육청	괴산읍 서부리	312	대	479	228	"
		대사리	206-1	답	376	20
명덕국	정용리	2	전	1,696	42	"
동인국	서부리	488	학	116	32	주택부지
이담국	감물면 이담리	55-3	대	218	10	능경지
연풍국	연풍면 삼풍리	159-1	학	4,606	480	"
청천국	청천면 청천리	43	전	3,207	257	"
송면국	송면리	529-1	학	1,132	65	주택부지
청안국	청안면 금산리	384-4	전	3,868	150	능경지
증평국	증평읍 증평리	1056	학	143	81	주택부지
광신국	소수면 봉촌리	225	"	293	16	"
복도국	불정면 복도리	290	"	495	45	"
삼보국	증평읍 초중리	11-19	"	66	26	"
음성교육청	음성읍 감우리	440-1	답	1,264	37	능경지
수봉국	읍내리	211-5	학	346	227	주택부지
남신국	"	757-6	"	1,720	387	능경지
덕생국	삼생리	19-1	전	5,308	314	"
무국국	금왕읍 무국리	80-12	대	743	668	주택부지
		산25-1	전	3,265	146	능경지
		본대리	218-2	대	304	37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소이국	소이면 금고리	68-1	학	2,277	372	주택부지
원남국	원남면 보통리	371-1	"	660	89	농경지
부윤국	대소면 부윤리	393	"	100	16	주택부지
청룡국	삼성면 청룡리	14-2	전	545	82	농경지
생국국	생국면 신양리	789	답	2,980	536	"
오생국	생리	748-1	"	12,135	364	"
감곡국	감곡면 오향리	489-2	대	362	165	주택부지
소이국	소이면 금고리	68	학	2,300	180	농경지
맹동국	맹동면 두상리	41-4	전	6,897	313	"
감곡중	감곡면 오향리	554-1	전	4,047	399	"
부국중	금왕읍 부국리	53	답	33,470	4,012	"
음삼도서관	음삼읍 읍내리	209	철·콘·슬	33	180	매점
단양교육청	단양읍 증방리	134-27	전	8,895	49	농경지
	상방리	산14-25	전	1,441	12	"
대강국	대강면 장림리	94-10	"	132	13	주택부지
황정분교	황정리	211	"	2,106	88	농경지
장정국	장정리	30	"	850	22	"
울산분교	울산리	189	학	680	4	"
노동국	단양읍 노동리	262-7	"	1,018	42	주택부지
금곡국	기촌리	107	"	3,531	85	"
가곡국	가곡면 사평리	468	"	202	22	"
영춘국	영춘면 상리	416	대	138	21	"
의풍국	의풍리	760	학	316	20	"
어상천국	어상천면 임현리	462-4	대	215	11	"
매포국	매포읍 평동리	633-1	답	962	85	농경지
매포중	"	118	시·벽·스	40.02	396	구내매점

92. 기관별 무상사용허가 내역

(단위: m²/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사용료	용도
본청	강내면 다락리	산 7	철.콘.슬	3,689.52		교원대기숙사
옥천공고	옥천읍 금구리	39-6	도	302		공설운동장 진입로
월곡국	강내면 월곡리	230	학	61,961		교원대부속국
	"	"	철.콘.슬	1,986		"
옥산국	옥산면 가락리	764-47	대	1,140		옥산지서
부강국	부용면 부강리	412-6	"	113		부강지서
강내국	강내면 탑연리	156-1	전	1,752		강내지서
	월곡리	229-1	"	440		"
북이국	북이면 내추리	3-3	학	1,220		북이지서
미원국	미원면 미원리	536-1	대	2,274		미원지서
벌수분교	회남면 벌수리	43	학	7,099		교원대수련원
	"	"	철.콘.슬	825.1		"
청산국	청산면 지전리	32-1	전	1,923		청산면사무소 보건소부지

관 계 법 령 발 쉐 서

=====

1.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4347호)

제 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5.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② 제1항 제4호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제77조 및 영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